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가단51835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묵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승수

변론 종결2022. 3. 22.

판결 선고2022. 4.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68,188원과 그중 24,255,389원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2021. 10.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20. 10.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10. 20. 접수 제150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경기도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마스크 제조 기계를 제작, 설치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9. 4. 24.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4. 4. 2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제6조 제1항은 책임경영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고,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경영관련 자료를 원고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2) 피고 회사는 2019. 4. 24.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보증약정에는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2020. 7. 16.부터 현재까지 연 10%임)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비용, 권리보전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2021. 2. 25.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약정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증약정에 따라 2021. 6. 17. D에 대출금의 남은 원금과 이자 합계 24,655,559원을 대위변제하고, 400,170원을 회수하였으며,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확정손해금은 109원이다.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512,690원이다.

4) 원고는 2021. 5. 31.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이행 약정 제6조에서 정한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 소명신청안내서를 보냈고, 피고 B는 2021. 6. 2. 이를 받았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회사는 2020.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51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2020. 10. 19.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10. 20. 접수 제150846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E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주식회사 E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청구금액: 438,390,844원)하여, 2021. 7.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가액이 540,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24,375,000원) 외에도 주식회사 E에 대한 429,976,76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250,000,000원, G에 대한 12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730,000,000원 등 1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위변제금, 확정손해금, 채권보전비용 합계 24,768,188원과 그중 대위변제 잔액 24,255,38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6.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10. 3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9. 4. 24. 이 사건 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같은 날 보증약정을 기초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인 2020. 10. 19.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20. 2. 25.경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 회사는 대출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회사 등에 1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각각 앞에서 본 것과 같다.
-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등 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원상회복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H과 동업으로 2020. 8. 11. 피고 회사와 마스크 제작 기계 14대를 15억 4,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 9. 7.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 4대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이행되지 않아서 피고 회사로부터 2020. 9. 17.까지 8억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1억 원만 반환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B가 2020. 9. 26.까지 반환하기로 한 나머지 7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안하여 응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 C은 H과 동업으로 마스크 제작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이에 따라 2020. 7. 31.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9. 5.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다), 2020. 8.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자동 평면 마스크 제작 기계 14대를 15억 4,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지급 시기와 납품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4조 [결재방식]

1. 계약금 : 8억원(₩800,000,000) (계약 후 2일 이내)
2. 중도금: 5억8천 6백만원 (₩586,000,000) (조립완료 시 : "갑"이 검수 확인 후)
3. 잔금 : 1억5천4백만원 (₩154,000,000) (납품 후 생산 가동시)
4. 납품일정 : 계약금 입금 후 30일 이내 (상호 협의)
5. 결재 계좌 :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예금주:(주)A
6. 설비 댓수! 14대

② 피고 C은 2020. 8. 11.~2020. 8. 21.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8. 23.~2020. 8. 27.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피고 C이 대표자인 H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이를 통해 지급하였다), 합계 1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20. 9. 7.까지 정상적인 기계 4대를 설치하였을 뿐 추가 설치한 4대는 작동되지 않았고, 이후 나머지 기계도 납품, 설치하지 않았다.

③ 이에 피고 회사는 2020. 9. 7. 정상 작동하는 설비 4대에 대한 대금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3,000만 원을 2020. 9. 18.까지 반환하기로 하면서 기계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20. 9. 17. 1억 원만 반환하면서 나머지 7억 3,000만 원을 2020. 9. 26.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20. 9. 26.까지 피고 C에게 반환 대금 7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2020. 10. 19. 피고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0.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 C은 마스크 제조를 위해서 우연히 마스크 생산 기계를 설치하는 피고 회사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반해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이전부터 거래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인 2020. 10. 19.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는 주식회사 E의 1순위 근저당권만 있었을 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가압류에 관한 등기가 전혀 없었다. 피고 회사의 보증사고는 2021. 2. 25.경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보다 약 4개월 앞선 시점에 이루어졌다.

⑦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⑧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거둬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E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다른 일반채권자의 존재나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이 신규로 마스크 제작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그 제작 기계 설비를 납품받기로 하고, 그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현실 지급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기계 설비를 제대로 납품할 수 없게 되자 물품대금 반환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면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진수

별지